KiRi Weekly
2014.5.12 제283호

포커스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글로벌 이슈
2013년 세계 보험산업 M&A 현황과 특징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KiRi Weekly 2014.5.12

포커스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현재의 손해배상 제도는 전보(compensational)배상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일으킨 직·간접적인 손해를 원상복구 시켜주는 수준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불법행위 예방효과는 미미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과 관련된 부분부터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관리 소홀 및 불법행위 예방장치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 세월호 참사의 경우 무리한 증축 및 화물 과다 적재, 선원들의 승객에 대한 구호 노력 소홀 등 회사의 관리 소홀과 여러 가지 중첩된 불법행위가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됨.[1)]
- 실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경영진 및 소유주의 관리책임 강화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불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징벌 차원의 금전 부담을 지우는 제도임.

-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함.[2)]
  - 법률상 손해배상은 계약관계에서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3)]과

1) 사법당국 역시 상기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2) 이상윤(1996), 『영미법』, 박영사, p. 252.
3) 민법 제390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4]으로 나눌 수 있음.[5]

-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6]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직·간접적 손해를 복구시켜주는 수준임.
  -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손해를 복구하는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전보배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전보배상"의 불법행위 및 관리 소홀 예방 효과는 미미함.
  - 세월호 참사의 경우 가해자가 사망자의 기대여명 동안의 평생소득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보상해 준다고 해도 이는 유족과 사망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는 것일 뿐 가해자가 관리 소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징벌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표적 해외사례는 1989년 액슨 발데즈(Exxon Valdez)호 사고의 경우를 들 수 있음.

- 1989년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은 선주사인 액슨(Exxon)사의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25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하였음.
- 액슨 발데즈호 원유 유출 사고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이루어져 유조선의 경우 바다와 원유탱크 사이의 격벽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설계방식이 의무화됨.
-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태안반도에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의 대규모 원유 유출사고가 있었으나 벌금 총액은 6,000만 원이었고 안전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별다른 제도적 변화는 없었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형사처벌이 수반될 경우 이중처벌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점임.[7]

- 징벌적 보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적 처벌이 존재하므로 금전적 부과는 하나의 범법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임.

---

4) 민법 제750조.
5) 본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의 대상을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한정함. 영미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요 대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고 있음.
6) 2013년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시 3배 이내에서 보상하도록 하여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고 있음.
7) 김현수 외(201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하는 주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징벌적 제재로 인한 불법행위 예방효과임.

- 피해자에게 원상복구 이상의 충분한 배상을 해주어야 함.
  - 현재 손해배상 제도 하에서 세월호 참사의 주된 희생자인 학생들의 예상 배상액은 일용직 노동자의 생애 예상소득 수준임.
- 영국, 미국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인정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4개 주[8]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1〉 전보배상과 징벌적배상 비교

구분	전보(Compensational)배상	징벌적(Punitive)배상
적용국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
배상의 범위	손해액에 한정	손해액 이상
불법행위 징벌	형사법적 징벌	형사법적, 금전적 징벌
불법행위 징벌 대상	실무자	실무자, 경영자 및 소유주
불법행위 예방효과	예방효과 없음	예방효과 있음
배상부담	상대적으로 적음	상대적으로 큼

주: 배상의 범위에서 손해액이란 정신적 손해 등 불법적 행위로 일어난 모든 손해를 포괄함.

■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적 처벌 대상도 실무자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부재할 경우, 기업의 최고 경영자 혹은 소유자는 불법행위를 묵인할 유인이 발생함.

-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해 기대되는 추가적인 이익이 사고발생 시 예상되는 복구비용보다 클 경우 기업소유주는 실무진의 불법행위를 묵인할 유인이 있음.
- 이에 반해 불법행위 혹은 관리 소홀로 인한 사상자 발생 시, 피해자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됨.

8) 메사추세스,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워싱톤.

■ 세월호 참사의 경우 관리부실이 부른 명백한 인재(人災)이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분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한지 3개월 만에 다시 한 번 안전관리부실로 인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은 안전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생명 혹은 안전과 관련된 분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임.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배상액 결정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재판은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심원제도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kiri